

| | |
|---|--|
| <p>그리고 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기술 등을 보유한 공기업 및 법인 또는 개인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해지 규정을 두고 있는바, 지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시설관리 공단에 여미지식물원위탁관리동의안 가결 시 입자가 있을 때는 곧바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조례안 제10조 제1항제3호에 “식물원의 매각 또는 공익 상의 사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위탁관리 운영으로 인해 매각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.</p> <p>○ 동 조례안은 식물원에 입장하는 자 및 이용자에게 입장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식물원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</p> <p>5. 질의 및 답변 : 생략 6. 소수의견 : 없음.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 11명, 만장일치) 8. 기타사항 : 없음.</p> <p>.....</p> <p>○議長 文一權 그러면 서울特別市濟州觀光植物園여미지運營에關한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.</p> <p>議員 여러분, 이의 없으십니까? 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關한조례안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(이하 “식물원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치 등) 식물원의 위치 및 주요시설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위치 :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2484-1</p> | <p>의</p> <p>2. 주요시설 : 온실, 민속정원(한국, 일본, 이태리, 불란서), 휴게소, 매점 등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식물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제4조(입장료 등) ①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원에 입장하는 자 및 이용자에게 별표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징수한다.</p> <p>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원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징수한 입장료 및 이용료를 징수한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입장료등의 면제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국빈,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. 공익 또는 학술·연구·조사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3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.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關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. 다만,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. 5.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참전용사 6. 기타식물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제6조(이용제한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식물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1. 위험물(총포류, 도검류, 화공약품, 농약 등), 악취,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2.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</p> <p>제7조(운영의 위탁) ①시장은 식물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설립한 공기업, 법인 또는 개인에게</p> |
|---|--|

식물원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원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.

③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.

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원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식물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 8 조(수탁자의 의무) ①수탁자는 식물원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③수탁자는 수탁시설·장비·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,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·대여·중여·담보설정할 수 없다.

④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,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, 식물원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식물원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

⑤수탁자는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 계획, 식물원관리규정의 개정, 새로운 시설의 증·개축 및 장비 등을 보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9 조(지도·감독) ①시장은 수탁자에게 식물

원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시설·장부·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위탁 업무에 대하여 위법·부당 등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0조(위탁계약의 해지)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 또는 위탁자와의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
2.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식물원의 매각 또는 공익상의 사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
②수탁자가 제7조의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식물원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<별표>

입장료 및 이용료(제4조제1항 관련)

1. 입장료

| 구 분 | 징 수 기 준 | 금 액(원) | 비 고 | |
|-----|-------------|--|-------|--|
| 개 | 일 반 | 19세이상 64세이하 | 5,000 | |
| | 청 소 년 · 군 경 | 청소년 : 14세이상 18세이하 군 경 : 하사관이하 군인 및 의경, 전투경찰 | 3,800 | |
| 인 | 노 인 | 65세이상 | 2,500 | |
| | 어 린 이 | 4세이상 13세이하 | 2,500 | |

| 구분 | 정수기준 | 금액(원)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|--|-------|
| 단 | 일 반 | 19세이상 64세이하 | 4,000 |
| | 청 소 년 · 군 경 | 청소년: 14세이상 18세이하 군 경: 하사관이하 군인 및 의경, 전투경찰 | 3,100 |
| 체 | 노 인 | 65세이상 | 2,000 |
| | 어 린 이 | 4세이상 13세이하 | 1,800 |

제주도민은 개인요금의 50% 할인(증명 확인 후)

※ 단체: 30인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
※ 관광진흥부가금은 공급가액의 2%임

2. 이용료

| 구분 | 정수기준 | 금액(원)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유람동차 | 어른, 청소년 | 14세이상 1,000 |
| | 어린이 | 4세 이상 13세 이하 500 |

30. 서울特別市低所得住民의生活安定支援에關한 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
(14時 42分)
○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特別市低所得住民의生活安定支援에關한 條例案을 상정합니다.
(議事棒 3打)
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같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.

.....
(參 照)
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
심사보고서
1998. 4. 9
보건사회위원회

1. 심사결과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
1998년 4월 1일 서울특별시장
나. 회부일자
1998년 4월 3일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제10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
보건사회위원회(1998.4.7.) 상정, 제안설
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

2. 제안설명요지(보건사회국장 朴漢慶)

지금까지 예산반영에 의하여 시행해 온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가. 보호대상자(안 제2조)
(1)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한 자
(2) 기타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
나. 보호내용(안 제3조)
(1) 결식아동 급식비, 교육관련경비, 명절보상품, 월동대책비, 긴급구호비 지원
(2) 기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다. 보호대상자의 결정(안 제4조)
(1) 생활보호법 규정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·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하여 통보한 자로 결정
(2) 긴급구호비의 경우는 본인 또는 그 친족,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
(3) 신청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함.

4. 참고사항
가.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다. 합의: 필요 없음.

5. 검토의견(전문위원 尹炳國)
○ 본 제정조례(안)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호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.
○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저